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게임제공업소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제재처분 근거 마련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4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게임제공업소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제재처분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3
※ [참고] 유사 입법례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게임제공업소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제재처분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1.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¹⁾(이하 “현행법”이라 함)상 게임 관련 업종으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 있음.

먼저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등)으로 분류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흔히 ‘PC방’이라고 불리는 곳을 의미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공공성 있는 게임물 이용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영업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함께 다른 사행성 없는 업종(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다중이용영업임.

현행법 제35조²⁾는 위 세 가지 유형의 게임제공업자가 사행행위를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

하거나 청소년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록 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³⁾

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생략)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 10. (생략)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 ⑤ (생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

에서는 마약류의 투약·제조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위반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일 뿐, 범죄가 발생한 장소(영업소) 자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는 아님.

이로 인해 PC방이나 성인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하거나 업주가 이를 방조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왔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장소를 제공한 사업주가 형사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해당 업소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실정임.

해당 업소가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의 통로로 계속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마약 범죄 공간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러던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게임제공업소 내에서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위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조의2 신설).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정지·폐쇄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공간이 범죄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 10. (생략)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 ⑤ (생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한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운영자)가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영업 허가·신고·등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허가취소 등의 사유를 단순히 “「마약류관리법」 상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로 규정할 경우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제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재판 등을 통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는 절차적 한정 문구를 신설·보완하여 제재처분의 객관적 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도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39호)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하여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유사 입법례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⁶⁾도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 등의 특성상 이용자가 은밀하게 마약을 투약·거래하는 행위를 영업주 등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바, 영업주가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이 필요하고, 준비 및 계도기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

6) “[참고] 유사 입법례” 참조

참 고

유사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9. (생략)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